

## [별지 제6호 서식] 원산지인증수출자 자율점검표

## 원산지인증수출자 자율점검표

## 1. 수출입 통관

점검 사항	점검 결과
1-1. HS 6단위 기준으로 전체 수출입 품목 수는 몇 개인가?	수입 <u>개</u> 수출 <u>개</u>
1-2. FTA 체결국 중 수출입 실적이 있는 국가를 모두 기재하시오. • EU는 국가명이 아니므로 독일, 프랑스 등으로 기재	

## 2. 인증사항 변경

점검 사항	점검 결과	
	예	아니오
2-1. 인증품목 중 원재료가 변경된 품목이 있는가?		
2-2. 원재료의 변경으로 완제품의 원산지가 변경되는 품목이 있는가?		
2-3. 인증일 이후 품목번호(HS6단위)가 변경된 품목이 있는가?		
2-4. 인증품목중 원산지결정기준(PSR)이 변경된 품목이 있는가?		

## 3. 원산지관리전담자

점검 사항	점검 결과		
	예	아니오	해당 없음
3-1. 원산지관리전담자의 인원수를 기재하시오.		<u>명</u>	
3-2. 원산지관리전담자가 외부전문가인 경우 계약기간이 경과되었는가?			
3-3. 원산지관리전담자가 교육이수 등 자격요건을 유지하고 있는가?			

## 4. 원산지증명서 서명카드

점검 사항	점검 결과	
	예	아니오
4-1. 원산지증명서 서명 카드를 작성 관리하고 있는가?		
4-2. 부서명·직책·성명·지정일자 등 기재사항은 정확한가?		
4-3. 서명카드에 등재되지 않은 자가 원산지증명서에 서명을 했는가?		
4-4. 자필로 서명을 했는가?		

## 5. 원산지기준 관리(5-2, 5-3은 인증받은 품목의 원재료에 중간재를 지정했을 때 작성)

점검 사항	점검 결과		
	예	아니오	해당 없음
5-1. 수출물품 및 원재료의 품목분류는 정확한가?			
5-2. 중간재로 지정된 물품의 수출자가 직접 생산하는가? (※중간재 : 부가가치기준일 때 최종제품 생산에 투입하기 위하여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재료를 사용하여 최종제품 생산자가 직접 생산한 재료)			
5-3. 지정된 중간재의 원산지기준이 충족하는가?			

## 6. 원산지증명서 관리(6-1~6-3은 인증받은 협정에 대해 작성)

점검 사항	점검 결과		
	예	아니오	해당 없음
6-1. 한-EU FTA ① 비원산지 물품이 혼재된 경우 송품장에 구분표시를 했는가?			
② 인증받지 아니한 품목에 대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했는가?			
③ 원산지증명서에 발급일자 및 장소를 기재했는가?			
6-2. 한-EFTA FTA : ① 인증수출자 번호를 정확히 기재했는가?			
6-3. 한-아세안, 한-인도 C/O : ① 물품의 생산자가 여럿인 경우 물품별로 표기했는가?			
② C/O 인쇄 후, 수출자 신고란에 서명권자의 친필로 서명했는가?			
6-4. 원산지증명서 작성 대장이 원산지관리전담자에 의해 작성·관리되고 있는가?			
6-5. 원산지증명서를 소급하여 발급한 사실이 있는가?			
6-6. 원산지증명서를 재발급한 사실이 있는가?			
6-7. 자율발급한 원산지증명서에 대하여 수정통보한 사실이 있는가? 있다면 그 사유를 기재하시오.			
6-8. 인증받지 않은 품목의 원산지증명서를 자율발급한 사실이 있는가?			
6-9. 인증품목 중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지 않는 품목이 있는가?			
6-10.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을 신청하였으나 반려된 사실이 있는가? 있다면 그 사유를 기재하시오.			

## 7. 원산지(포괄)확인서

점검 사항	점검 결과		
	예	아니오	해당 없음
7-1. 발급하여 제공한 원산지(포괄)확인서는 몇 건인가?	<u>건</u>		
7-2. 제공받은 원산지(포괄)확인서의 포괄확인기간이 경과되었는가? 경과되었다면 그 사유를 기재하시오.			
7-3. 제공받은 원산지(포괄)확인서에 원재료 또는 수출물품의 공급자가 변경되었는가? 변경되었다면 변경이후 원산지결정기준에 영향을 주는가?			
7-4. 제공받은 원산지(포괄)확인서에 작성자의 성명·서명 등이 기재 되었는가?			
7-5. 제공받은 원산지(포괄)확인서에 기재된 원산지결정기준이 정확한가?			
7-6. 원산지(포괄)확인서 발급업체에 원산지관리 방법을 지원하는가? 지원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는가?			
7-7. 원산지(포괄)확인서 발급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를 관리하는가?			

## 8. 제조공정

점검 사항	점검 결과	
	예	아니오
8-1.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제품의 제조공정도를 구비하고 있는가?		
8-2. 해외에도 생산공장이 존재하는가? 존재한다면 인증품목과 동일한 물품을 생산하는가?		
8-3. 생산공정이 모두 국내에서 이루어지는가?		
8-4. 불인정공정에 해당하는가? (※ 불인정공정의 범위 : 단순조립작업, 최초의 물품 특성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산지가 상이한 물품의 혼합, 포장개선 작업 등)		
8-5. 제조공정도의 작성일자와 작성자가 기재되어 있는가?		

## 9. 서류 보관

점검 사항	점검 결과	
	예	아니오
9-1.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 증빙서류를 빠짐없이 보관하고 있는가?		
9-2. 원재료 명세서를 정확하게 작성·관리하고 있는가?		
9-3. 보관하고 있는 증빙자료로 원산지를 판정할 수 있는가?		

**\* 10~12 항목은 해당되는 경우에만 작성**

**10. 원산지소명서(기관발급 원산지 증명 신청분에 한함)**

점검 사항	점검 결과	
	예	아니오
10-1. 원산지소명서와 송품장의 품명규격이 동일한가?		
10-2. 제품의 품목번호(HS 코드)의 결정방법을 선택하여 기재하시오. ①관세청 품목분류 질의 ② 관세사의 품목분류 의견서 ③ 유사물품 품목분류 사례 ④ 해외 거래처의 요청 ⑤ 당사 수출입 품목 ⑥ 해외 품목분류 사례		
10-3. 물품명세의 물품가격을 협정에 따라 조정했는가? (EXW : 한-EU, 한-EFTA, FOB : 한-아세안, 한-인도 등)		
10-4. 원재료명세서에 투입된 원재료를 빠짐없이 기재했는가?		
10-5. 작성자의 성명·서명 등이 기재되었는가?		

**11. 원재료 관리(생산자에 한함)**

점검 사항	점검 결과	
	예	아니오
11-1. 원산지별로 구분하여 원재료의 재고관리를 하고 있는가?		
11-2. 적용하고 있는 원재료 재고관리기법을 기재하시오. (개별법, 선입선출법, 후입선출법, 평균법 등)		
11-3. 완성품과 HS 4단위가 동일한 원재료(부분품)가 있는가? 있다면 관리방법을 기재하시오.		

**12. 원가관리(부가가치기준 적용품목)**

점검 사항	점검 결과	
	예	아니오
12-1. 협정에서 정한 가격기준(EXW 또는 FOB)을 바르게 적용하여 제품가격을 산출했는가?		
12-2. 원가배분방식을 바르게 적용하여 원가계산서를 작성했는가?		
12-3. 판매비와 관리비, 이윤 등을 적정하게 책정했는가?		
12-4. 수입산 원재료의 가격을 CIF가격으로 책정했는가? 그렇지 않다면 그 사유를 기재하시오.		